

교육전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 정 2013. 2.21	규정 제363호	10차 개정 2018. 7.16.	규정 제646호
1차 개정 2013. 4.15	규정 제392호	11차 개정 2019.12.16.	규정 제694호
2차 개정 2013. 5.16	규정 제440호	12차 개정 2021. 2.23.	규정 제748호
3차 개정 2013. 6.26	규정 제444호	13차 개정 2021. 6.17.	규정 제756호
4차 개정 2013. 8.26	규정 제450호	14차 개정 2021. 8.23.	규정 제759호
5차 개정 2015. 4.17	규정 제535호	15차 개정 2023. 6.12.	규정 제816호
6차 개정 2015.10. 6	규정 제566호	16차 개정 2024. 6. 7.	규정 제846호
7차 개정 2016. 6.24	규정 제581호		
8차 개정 2016.11.10	규정 제595호		
9차 개정 2017.12. 7	규정 제6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학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교육전문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교육전문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 학위수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하며, 학위논문 작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학위논문

제3조(학위의 종류 및 종별) 대학원의 학위는 교육학석사(전공명) 및 교육학박사(전공명)로 한다. <개정 2016. 6. 24.>

제4조(학위논문의 구분) 학위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및 박사학위 논문으로 구분한다.

제5조(논문 지도교수의 선정) ①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 학생은 입학 후 2차 학기까지 본교 교원(겸임교원 포함)을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

라 한다)로 선정하여, 논문제출시까지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

5. 10. 6.>

② 박사과정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 외에 공동지도 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지도교수는 타 대학 전임교원 및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그 외 총장이 인정하는 본교 전임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③ 전공주임교수는 전공별 학생의 지도교수를 정하여 교육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는 입학 년도별 5명(석사 및 박사과정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가 5명 초과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 전공주임교수 동의를 거쳐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4. 15., 2017. 12. 7.>

제6조(논문계획서 및 논문공개발표)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학기의 2개 학기 전에는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발표회를 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7.>

제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학기 말까지 각 학위과정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이고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 학생 및 국외 대학원 공동(복수)학위 학생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7., 2017. 12. 7.>

② 박사학위과정학생은 재학기간 중 연구실적으로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로 논문을 게재하거나, 100% 이상(경인교육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의함)의 논문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 4. 17.>

제8조(학위자격시험) ① 박사과정의 학위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으로 구성하며,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 석사과정의 학위자격시험은 전공종합시험으로 실시하며,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단, 전공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위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외국어시험 응시 자격은 3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2. 전공종합시험 응시 자격은 3개 학기 이상 수학하고 석사과정은 18학점,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의 교과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④ 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전공에서 요청시 다른 외국어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전공종합시험은 전공분야의 기초 및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을 종합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과목의 수는 석사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⑥ 석사과정의 경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전공의 특성에 맞게 전공종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방식 및 배점, 합격기준을 포함한 실시 계획을 사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학위자격시험 응시절차) ①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

학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료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① 학위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학위자격시험의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은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4., 2018. 7. 16.>

② 전공종합시험의 합격기준 점수는 각 전공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평균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전 과목에 대하여 차기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중 낙제과목이 있고, 평균이 70점 이상일 때에는 낙제과목에 한하여 차기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③ 지필 시험 이외의 방식으로 전공종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에서 정한 배점 및 합격기준을 따른다.

제12조(시험 면제) ① 외국어시험의 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 해당성적표를 제출한 경우

가. TOEFL iBT 86

나. TOEIC 755

다. TEPS 600 (New TEPS 327)

- 라. IELTS 5.5
2.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 평가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
3.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 논문을 게재한 경우
4. 외국인전형 입학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 해당성적표를 제출한 경우
- ②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학생은 전공종합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시험결과보고) 전공주임교수는 학위자격시험 결과를 시험종료 후 1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제14조(논문심사자료 제출) ① 논문공개발표를 마친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청구논문심사원,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및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와 함께 논문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7.>

② 논문의 제출시기는 석사과정은 5월과 11월로 하고, 박사과정은 3월과 9월로 한다. <개정 2017. 12. 7.>

③ 논문심사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5조(학위논문 제출기간) ① 석사학위 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4년 까지, 박사학위 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되어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논문심사료 외에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에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6조(학위논문 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작성은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경인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의 전공별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석사과정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박사과정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5. 16., 2017. 12. 7.>

③ 심사는 논문심사로 한다.

제18조(논문의 평가 및 보고) ①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심사위원별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최소 2회 이상으로 하며, 논문심사의 통과는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로 결정한다. <개정 2015. 4. 17., 2017. 12. 7.>

③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최소 3회 이상으로 하며, 논문심사의 통과는 논문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가”로 결정한다. <신설 2005. 4. 17., 2017. 12. 7.>

④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

에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심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7.>

제19조(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20조(학위수여) ① 경인교육대학교총장은 제7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심사와 논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학석사 및 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6. 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 중 학위논문 대체과정 희망자에게는 학위논문 대체과정을 통하여 교육학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6., 2016. 6. 24.>
③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학칙 제4조의3에 따른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역을 학위기에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24.6.7.>

제21조(학위논문 대체과정) ① 학위논문 대체과정(이하 “대체과정”이라 한다)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는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대체과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과정 신청자는 수료 이후 대체과정을 신청한 학기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추가로 이수한 논문대체 교과목의 성적은 B^o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B^o학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개설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7., 2023.6.12.>
④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에 따라 대체과정으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

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삭제>

제22조(학위 취소) ① 연구부정행위로 학위를 받은 자는 연구윤리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위 취소자는 학위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5. 4. 17.>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11조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교육전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 2017.1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94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제21조제1항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48호, 2021.2.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6호, 2021. 6.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9호, 2021.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2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6호, 2024.6.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 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교육학석사/박사 학위 과정에서

() 전공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석/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교육학석사/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전 공: 석사/박사과정 ○○전공 교육학석사/박사
마이크로디그리과정: ○○과정

년 월 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교육학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등록번호 : 경인교대 ○○(석/박) ○○